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일부)

제17조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및 양도)

- ① 제3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는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 ②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및 양도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③ 유상으로 지식재산권을 실시허여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인 기술료를 일시불 또는 실적급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일시불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투자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시 전액 징수하여야 하며, 실적급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간 총 판매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매년 징수토록 한다. 다만, 제공 기술의 실제 가치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조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관리업무절차(일부)

제22조 (지식재산권 실시허여)

① 회사 지식재산권을 타 기관(사)에 실시허여하고자 하는 운영부서장은 실시요청기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록된 기술사용(양도)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접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제공요청기술
2. 사업개발내용
3. 개발 예상 효과(예상 매출액 포함)
4. 개발능력
5. 기타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을 검토 한 운영부서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직무발명자 등 별도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실시요청기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표준기술 사용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준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주관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1. 기술실시 허여 필요성
 - 가.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로 회사의 권리가 무용화 될 가능성 여부
 - 나. 사업수주 활동에 미치는 영향
2. 실시허여 업체의 자격요건
3. 기술 실시허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4. 실시 허여 시의 대가 기준(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및 기술료 징수 형태
5. 기타 필요사항
6. 특수계약조건
 - 가. 기술자료 목록에 관한 사항
 - 나. 기술의 제공방법,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다. 권리 실시허여 이외의 별도 기술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라. 계약관리 부서 및 기술이전 부서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 (지식재산권 실시허여 원칙)

① 제3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는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전용 실시권을 허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지식재산권 관리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실시 사유를 명시하여 주관부서를 거쳐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및 양도는 유상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그 대가인 기술료를 일시불 또는 실적급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허여할 수 있다.

제24조 (기술료 징수 방법)

① 기술료 징수는 일시불과 실적급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일시불 징수

가. 허여기술이 생산 또는 판매단계에 있는 기술

나. 실시 허여기술 또는 유사기술의 상업화가 입증되어 설비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

2. 실적급 징수

가. 상업성이 불확실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기술

나. 사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

다. 신규 및 해외사업 진출 등 전략적으로 개발된 기술

② 일시불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투자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시 전액 징수하여야 하며, 실적급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간 총 판매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매년 징수토록 한다. 다만, 제공 기술의 실제 가치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부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시 허여업체와 상호 실시권을 교환하는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변경 등을 통해 기술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기술료 징수실적 통지 및 실시업체의 사후관리)

① 운영부서장은 지식재산권을 실시하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실적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술을 실시하여한 운영부서장은 계약 체결 후 기술 실시하여 업체에 대하여 계약조건 이행 및 당해 기술을 이용한 기술의 개량, 제품의 생산 및 상용화 실적 등 활용실태를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연락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제3자 공동 권리의 실시 허여)

회사가 제3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권리 및 기술의 실시허여는 양자간 기술실시에 대한 별도 협약이 없는 한 사전에 상호간 서면으로 합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7조 (지식재산권 도입 사용)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운영부서장은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2013. 12. 26 개정)

기술사용(양도) 신청서



년 월 일

신청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대표자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기업규모	
신청내역	제공요청기술				
	사용목적				
사업계획	개발제품				
	투자액(예산)		매출액(예상)		
위와 같이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용(양도)를 신청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소속(기관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회사 PQ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납세완납증명서					
5. 재무제표류(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개발 내용

- 가. 개발 제품 명
- 나. 제품 생산 예정일
- 다. 개발 추진 일정

개발항목	추진일정(Bar Chart)							비고

2. 개발 예상 효과

- 가. 예상 매출액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계
판 매 량				
매 출 액				

- 나. 기타 효과(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

3. 개발 능력

- 가. 개발 경험(추진 실적)

기 개발 항목	기 간	실 적

- 나. 개발 관련 인력 및 설비 보유현황

- 인력

총인원	개발 관련 인력(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타	계

- 설비

설비 명	용도	규격	수량	구입일

4. 기타사항